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485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보험료 산정 관련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에 관한 반올림 규정 신설	2

I. 개요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48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3. 31.
- (3) 회 부 일 : 2025. 4.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에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대비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하도록만 규정할 뿐, 특정 자릿수에서의 반올림 규정은 부재함.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소수점 이하 단위가 끝없이 생성될 수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를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보험료 산정 관련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에 관한 반올림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관련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u>비율</u>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 ----- ----- ----- ----- ----- ----- ----- ----- <u>비율(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 7. 1.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9조¹⁾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7.09%)²⁾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³⁾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64조⁴⁾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단수처리(끝수처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10원 미만의 끝수는 원단위 절사하도록 하고 있음.

<산출 예시> (근로소득 월 300만원 가정)

$$\begin{aligned}\text{장기요양보험료} &= \text{건강보험료 } 212,700\text{원} \times \frac{\text{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text{건강보험료율} 7.09\%} \\ &= \text{건강보험료 } 212,700\text{원} \times 0.129506346967... \\ &= 27,540\text{원}(\text{원 단위 절사})\end{aligned}$$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2)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09로 한다.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182로 한다.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끝수 처리)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 단위가 무한히 이어짐에 따라 보험료 산정 시 일부 가입자 및 사업주 등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로, 舊 「노인장기요양보험법」⁵⁾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건강보험료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건강보험료액에 舊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⁶⁾에 명시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직접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산출이 가능했으나,

2021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개정, 2022. 6. 22. 시행)⁷⁾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건강보험료율(7.09%)로 나눌 경우 소수점 이하 단

5) 舊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8328호, 2021. 7. 27 개정, 2022. 1. 28. 시행)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舊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36호, 2021. 12. 21 개정, 2022. 1. 1. 시행)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1,227로 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개정, 2022. 6. 22. 시행)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가 무한히 이어짐에 따라 건강보험료액에 곱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에 대해 일부 가입자 및 사업주 등의 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⁸⁾

□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 관련,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료 산정 관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타 법령에서 소수점이하 특정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⁹⁾에서는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시 소수점이하 특정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¹⁰⁾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의 상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매월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있음. 다만, 일부 사업주 등의 경우 사전에 자체적인 계산방식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장기요양보험료를 미리 계산하여 유보해 두고 있는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계산식에 대한 일부 사업주 등의 혼란이 있어 자체적으로 잘못된 계산식(예: 건강보험료에 12.95%를 직접 곱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함에 따라 실제 공단이 고지한 보험료와 미세한 금액 차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9)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	------------------	---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frac{2}{3}$ 억원	-	3	)	×	$\frac{1}{100}$
---	------------------	---	------------------	---	---	---	---	-----------------

10)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한액 및 하한액 계산 시 소수점 이하 특정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개정안에서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1퍼센트 단위로만 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책환경에 따른 미세한 요율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임.

개정안의 취지가 퍼센트 단위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규정하려는 것일 경우¹¹⁾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²⁾

< 현행 및 개정안/수정의견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소수점이하 셋째자리 반올림)	수정의견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 반올림)
$\text{건강보험료} \times \frac{0.009182}{0.0709}$ $= \text{건강보험료} \times 0.129506346967\dots$	$\text{건강보험료} \times 0.13$ (13%)	$\text{건강보험료} \times 0.1295$ (12.95%)

- 둘째, 안 부칙에서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5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식이 어느 월별 보험료분부터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시행일이 속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11) 참고로, 舊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음.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2021년) 11.52%, (2022년) 12.27%

12) 참고로 현행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0.129506346967...)’을 기준으로 할 때, 개정안에 따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할 경우 0.13(13%)이 되며, 수정의견과 같이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할 경우 0.1295(12.95%)가 됨.

하는 달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견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명확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도입 취지에 공감함. 소수점 이하 계산의 모호성을 제거하여 민원소지를 방지하고, 보험료 산정의 명확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03